

서울특별시 성북구
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전부개정조례안



성 북 구
(자치행정과)

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22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 : 2023년 11월
제출자 : 성북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이 시행('23. 4. 27.)됨에 따라 상위법과 시행중인 조례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,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율방범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제명 변경

- (현행)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
- (개정)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

나. 자율방범대 지원의 목적과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에 따라 정비 (안 제1조 ~ 제2조)

다.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와 경찰서와의 협조체계 구축 규정 (안 제3조)

라. 경비 지원 절차·범위 및 지원 중단 등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(안 제4조 ~ 제10조)

마. 자율방범대 활동 격려를 위한 교육, 포상 및 준용 사항 규정 (안 제11조 ~ 제13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4조(경비 등의 지원)
-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(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) 및 제3조(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협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

- 예고기간 : 2023. 09. 27. ~ 10. 17.(20일)
-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 등 자료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3) 인권/부패/성별/아동 영향평가 결과

- 인권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-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- 성별영향평가 결과 : 개선의견 없음
- 아동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
4) 법제심사 결과 : 수정의견

구분	검토의견	반영 여부	반영내용 및 미반영 사유
법제 심사	제4조제1항 본문 문구정비	반영	제4조(경비 지원 등) ① 구청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 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	제4조제1항제2호 약칭 삭제의견	반영	제4조(경비 지원 등) 2.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(이하 “ 령 ”이라 한다)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경비
	제6조제3호 인용조문에 맞춰 수정의견	반영	제6조(지원 중단 등) 3. 제9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따르지 않는 경우

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성북구 자율방범대”(이하 “방범대”라 한다)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활동하는 단체로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.
2. “성북구 자율방범연합대”(이하 “연합대”라 한다)란 방범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,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.
3. “자율방범대원”(이하 “대원”이라 한다)이란 법 제6조에 따라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방법대 및 연합대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경비 지원 등) ① 구청장은 방법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**예산의 범위에서**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경비
2. 「자율방법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경비
3. 방법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
4. 그 밖에 방법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

② 구청장은 방법대 및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.

제5조(지원 절차 등) ① 제4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법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
2. 자율방법대 조직 신고증 및 자율방법대원 명단
3. 자율방법대 및 연합대의 정관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방법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제6조(지원 중단 등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.

1.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
2.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
3. 제8조에 따른 **지도 및 감독을 따르지 않은 경우**
4. 그 밖에 방법대 및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법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

제7조(정산)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방법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
2.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
3. 방법활동 근무일지

제8조(지도 및 감독) ① 구청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업내용의 관련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방법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·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방법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·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정기·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9조(환수) 구청장은 제8조의 지도 및 점검 결과 방법대 및 연합대가 부정

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

제10조(교육) 구청장은 경찰서와 협조하여 방범대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11조(포상)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 대원에 대해서 법 제11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 이 경우 포상은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2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0000년 000자율방법대 지원금 신청서

신청인	방법대명		대 원 수	명
	대 장		연 락 처	
신청내역	신청금액	금 한글기재 원 (금 숫자기재 원)		
	입금계좌	◦ 은행명 /계좌번호 /예금주(직위)		
사업내용	사 업 명			
	사업계획	◦ 순찰 계획 ◦ 지원금 사용 계획 등		
	기 간	년 월 일 ~ 년 월 일		
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법대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○○동 자율방법대장 (서명/인)				
※ 붙임서류 : 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				

0000년 000자율방범대 지원금 정산서

1 교부 및 집행 내역

(단위 : 원)

구 분	교 부 액	지 출 액	집행잔액	이자발생액
계				

○ 비목별 집행내역

- 야식대 : 0,000원 (총 0건)
- 유류비 : 0,000원 (총 0건)

2 세부 집행 내역

(단위 : 원)

연번	지 출 일	지출금액	지출내역	대상인원	지출과목(비목)
	계				
1					
2					
3					
4					
5					
6					

※ 통장 기장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각 일자별 지출결의서(대장, 총무 결재) 작성 후 영수증 등 첨부

년 월 일

○○ 동자율방범대장

(서명/인)

0000년 000자율방범대 지출결의서

(연번)	결 재	총 무	대 장
지출금액	금 한글기재 원 (₩ 숫자 기재)	지 출 일	년 월 일
지출과목 (비 목)			
지 출 내 용			
사용처		지출방법	
○ 지출 세부내역(산출근거) : ○ 영수증 첨부			

※지출건별 작성

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

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따른 비용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『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』 제11조제2항제1호
 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함
-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금 : 61,182천원
 - 자율방범대 복장 및 장비지원 : 45,100천원
 - 자율방범대 야식대 및 운영비 등 : 16,082천원

4. 작성자

행정문화국 자치행정과장 고영룡